

부산광역시사하구을속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건립한 문화회관의 준공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허가, 사용료의 징수기준,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회관운영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함.

(안 제2조)

나. 허가사용할 수 있는 회관시설의 범위는 대공연장, 연습실, 전시실 등 기본시설과 조명시설, 음향시설, 영사기등의 부대시설로 구분하고,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4조 및 제8조)

다. 교육수강료 기준과 납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(안 제11조 및 제12조)

라. 회관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또는 설비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무를 규정함 (안 제15조 및 제16조)

마.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8조)

바. 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책결정등에 있어 필요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9조)

3. 관련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제127조 (사용료)
- 나. 지방자치법제128조 (수수료)
- 다. 지방자치법제130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등)
- 라. 지방자치법제135호 (공공시설)

4. 검토의견

-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읍속도 문화회관의 준공에 따른 회관시설의 사용허가, 사용료의 징수기준, 교육수강료 기준등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서
- 시설사용료 산정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산출내역과 다른 문화회관의 징수료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
-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련규정 및 다른지역 문화회관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조항을 제정하였으므로 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

2002. 5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삼림